

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2518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6. 13.

제출자 : 달성군수

1. 제안이유

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
- 나. 시설의 기능(안 제4조)
- 다.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(안 제5조~안 제7조)
- 라. 시설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안 제11조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5조, 제6조
(※ 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기타
 - (1) 입법예고(2024. 5. 7. ~ 5. 28.) 결과 : 의견 없음
 - 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(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- 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5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6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학교”란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있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“학교복합시설”이란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학교 및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,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능) 학교복합시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돌봄 및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지원
2. 학생과 주민의 정서 함양,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·예술 활동 지원

3.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
4. 교양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운영
5. 여가선용(餘暇善用)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학교복합시설의 설치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(이하 “감독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
2.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6조(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)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,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유한 운영·관리 권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이 위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1.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조,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군이 설립한 같은 법

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

3. 문화·체육·복지·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
③ 군수가 제2항 본문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그 협약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지원)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수탁자의 의무 등) ① 수탁자는 효율적으로 학교복합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운영·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제7조에 따라 받은 지원금을 시설 운영·관리에 적합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시설 내 기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수리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.

제9조(지도 및 감독) ① 군수는 수탁자로부터 시설의 위탁 운영·관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을 방문하여 위탁 관련 서류 일체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,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,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0조(위탁의 해지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
2.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3.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경우
4.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
5.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·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수탁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1조(원상회복 및 손해배상) ① 수탁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이 해지되거나 협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하거나 설치한 시설물로서 군수가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그 시설물이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수탁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등을 따르거나 준용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,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조(학교복합시설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(이하 “감독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
2.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,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,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·개축,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, 재정 부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,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.

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에 따른다.

⑥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(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 원칙)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,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-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는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학교복합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,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학교복합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,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